

대구예술대학교 재입학에 관한 규정

(개정 2007.05.14. 교무위원회)

(개정 2014.04.01. 교무위원회)

(개정 2022.08.01. 교무위원회)

(개정 2024.08.19. 교무위원회)

제1조 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8조 및 제12조에 의거 퇴학한자 또는 제적된 자의 재입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 (재입학시기) ① 학기 초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정의 기간내에 할 수 있다. 재입학원서를 학기 초 소정 기일 내에 소속 전공주임교수를 경유 교무처에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3조 (재입학자격) ① 삭제 (개정 2007.05.14)

② 재적하였던 학과에 여석이 있을 때 동일학년으로(등록된 학기 인정)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. 다만, 학칙 제57조에 의하여 제적된 자는 재입학을 제한할 수 있다. 단, 징계제적자 중 개정의 정이 확실하며 성행이 우량하다고 인정 될 경우 소속 학과(전공) 교수회의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총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.(개정 2007.05.14)

③ 재적하였던 학과(전공)가 모집중지 또는 폐전공 되었을 경우에는 학칙 제2조 (학과와 입학정원)에 편성된 전공으로 재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.(개정 2014.04.1.)

제4조 (재입학허가) 입학의 허가는 당해 전공교수회의를 거쳐 전공주임교수의 상신에 의하여 총장이 이를 허가한다.

제5조 (등록) ① 재입학이 허가된 자는 소정 기일 내에 납입금을 납부하여 등록을 완료하여야 한다.(개정 2024.08.19.)

② 전항의 절차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입학허가를 취소한다.

제6조 (학부입학생) 학부모집단위로 입학한 학생은 규정 내 관련된 사항에 대해 전공배정 전에는 학부장의 승인과 전공배정 후에는 학부장 및 전공주임교수 승인을 거쳐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(신설 2022.08.01.)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1998년 7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개정규정(2014.04.01.)은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 (시행일) 이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24.08.19.)

제1조 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